

TIPLONews 한국어본

2019 년 9 월호(K241)

K190817Y1

K190816Y1

**01 자동차 헤드램프 제조업체의 특허권을 침해와 관련,
지재법원은 Daimler¹⁾의 승소를 판결**

독일회사인 Daimler 는 대만내 헤드램프 제조업체인 DEPO²⁾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. 그에 의하면, DEPO 가 제작한 제품이 자신들의 대만 D128047 "차량 헤드 라이트"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; DEPO 는 이에 대해 디자인 특허가 무효이며 침해되지 않았고, Daimler 는 시장 지위남용등을 했다고 지적했다. 지재법원의 심리를 통해, DEPO 가 권리침해를 하였다고 판결했다. .2019 년 8 월 16 일, Daimler 는 1 심에서 승소했으며, DEPO 는 Daimler 에게 NTD3 천만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.(2019.08)

역주:

- 1) 독일 자동차제조그룹 Daimler AG를 지칭.
- 2) 중국어명 帝寶工業股份有限公司 (DEPO AUTO PARTS INDUSTRIAL Co., LTD.)를 지칭.

K190813Y2

02 10 년에 걸친 상표명칭 침해소송후, 대만 자동차 윈도우 필름업체 패소

자동차 윈도우필름 상표인 "V-KOOL"을 보유한 싱가포르업체 ¹⁾는 대만의 전통등 ²⁾을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했다. 전통은 상표에 대한 선의의 우선 사용자로서, 상표권 효력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. 싱가포르업체는 민사소송을 통해 NTD525 만원을 청구하였고, 3 심을 통하여 승소했다.

싱가포르업체는 비록 1996 년이 되어서야 대만에 상표등록했지만, 대만

대리상³⁾을 통하여 등록전에 이미 판매를 해왔으며 그 상표는 해외에서도 이미 수년간 사용하여 상표의 지명도를 구축했다. 따라서 전통의 표절은 소비자의 혼돈을 초래하고, 상표권리에 침해하며 거래질서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.

이에 대해 전통은 1991 년초부터 자동차 윈도우 필름상품에 “V-Kool”이라는 상표를 사용하였고, 본건과 관련하여 형사사건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, 그 내용은 “V-Kool” 상표의 선의의 사용자로서 계속 사용할 수 있고, 1995 년 견적서를 제시하여 싱가포르업체가 대만에 와서 상표 등록하기 전에 이미 상표를 사용하였기에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.

지재법원은 견적서에 대한 세부내용을 검토한 후 싱가포르업체가 제출한 전자메일에 의거하여, 전통이 1996 년 6 월전에 전통 자신이 중국 및 대만지역의 대리점이 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다. 이는 전통이 V-Kool 이라는 이미 상표를 알고 있었고 악의로 사용했다는 것을 나타내며, 선의로 사용했다는 여지를 성립시키지 않는다고 했다. 따라서 전통의 패소를 판결하였고, 해당 안건 전체는 최고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. (2019.08)

역주:

- 1) 이 업체는 新加坡商首諾新加坡私人有限公司(SOLUTIA SINGAPORE PTE. LTD.)를 지칭함.
- 2) 이는 全統隔熱紙有限公司, 全統國際有限公司, 및 全統隔熱紙有限公司 설립자王祥民가족 4 명등 6 명을 지칭함.
- 3) 臺灣維固股份有限公司을 지칭.

K190801Y4

03 퇴직한 직원, 경쟁금지조항을 위반, NTD96 만여원 위약금 배상판결

편광판 제조업체 A 사는 노(盧)씨 성의 남자(A 회사의 전직원)을 영업비밀 및 경쟁금지조항을 위반하였다고 고소했다.

대남¹⁾지방법원은 노씨의 행위가 영업비밀의 침해를 구성하지는 않지만, 경쟁금지조항을 위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, 약 NTD 96 만여원을 위약금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. 본안은 상소할 수 있다.

대남 지방법원 판결에 따르면 2003년 9월 15일부터 2014년 9월 15일까지 A 회사에서 근무했으며, 그중 2014년 7월에서 9월까지는 통합기술부 생산기술과 과장으로 근무했었다. 그리고 노씨는 양 당사자간의 고용계약서 (경쟁금지조항 및 비밀유지조항을 포함) 및 기밀유지 계약서에 서명했었다.

노씨는 A 회사에서 산업프로세스와 관련한 기밀 기술을 상당히 이해하였고, 이직 후도 경쟁금지조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. 그러나 2014년 9월 22일 C 회사(B 회사의 투자회사로 자회사에 해당)로 이직하여 제조부 경리를 담당하며, 실질적으로 B 회사의 편광판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. 이러한 행위는 이미 양 당사자간에 체결한 계약의 경쟁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.

따라서 A 회사는 노씨에게 NTD96 만원의 1년간 연봉에 해당하는 계약 위약금을 변상하라고 요구했다.

또한 A 회사는, 2014년 7월 7일부터 7월 22일까지 노씨 전직원이 B 회사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하여, 당시 아직은 재직중이던 A 회사에서 회사의 아주 중요한 "T 프로젝트"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복사하여 자신의 개인 우편함에 보냈고, "T 프로젝트"의 영업비밀을 B 회사에 유출한 의심을 갖게 한다고 주장하였다.

그러나 "T 프로젝트"가 A 회사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했으나, A 회사는 전직원 노씨가 "T 프로젝트"의 영업비밀을 B 회사로 이전했다는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고 동시에 영업비밀이 침해되었음을 증명할 수 없었다. 따라서, A 회사는 회사기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노씨를 고소한 부분에 대해선, 이유가 없기에 기각했다. (2019.08)

역주:

1) 대만의 남부지역 台南을 지칭함.

K190827Y9

04 대만 산업혁신은 지속, 지적재산권에 투자는 매년 증가

경제부 통계처는 2019년 8월 27일 "고정자산투자현황"을 발표했다. ※ 2018년 고정자산투자는 NTD3.7조, 실질성장은 2.5%이고, 2019년 상반기에는 7.2%에 달했다. 부문별로 보면, 대만의 민간부문은 2014년 이후에 균일하게 80% 이상을 차지하는 투자의 주력 부분이 되고 있다.

투자형태는 건축공학, 기계 및 설비를 기반으로하며 지적재산권에 대한 투자도 산업혁신 및 업그레이드의 요구에 부응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.

대만의 지적재산에 대한 투자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고정자산 투자비율은 19.2% (2011)에서 23.9% (2018)로 4.7% 증가했다. 이는 일본 (2017년 22.4%)과 한국 (20.4)보다 4.7% 포인트 높은 수치이나 여전히 미국(27.0%) 보다는 낮은 수치이다. 대만의 투자가 점차 지적 재산으로 이동함에 따라 산업 혁신을위한 경쟁력 또한 점차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 (2019.08)

※비고 : 이 보고서의 고정자산투자 자료는 토지를 제외한 국가 행정부의 국가 소득 통계에서 가져왔다. 그러나 상장회사의 고정 자산으로의 토지구매는 포함했다.